



문서번호 : 25-05-디정위-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5. 5. 20.(화)

전송매수 : 총 2매

[공동 보도자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2025. 5. 20.(화) 14:00, 용산 대통령실 앞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25. 5. 20.(화) 14:00,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2025. 4. 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 4. 4.부터 4. 11.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그 일가와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통령비서실은 2025. 4. 18.경 정보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는 한 줄 통지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이동규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관저에서 만찬을 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국가의 예산을 사용했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기록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나아가 당연히 있어야 될 정보를 부존재한다고 통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그 지출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규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정보부존재통지를 하며 처분서에 담당자 이름 조차 명기하지 않았으며, 담당자의 실명을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대통령실의 ‘정보부존재’가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회피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위법한 공개거부나 회피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공개에 적대적 태도를 유지했으며,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지우고 연락처 조차 지워서 통지하는 대통령실의 불투명성을 규탄했다. 특히 정진임 소장은 대통령비서실이 모든 기록의 이관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비공개된 정보가 최장 30년간 봉인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은진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정보를 은폐하고 부존재로 통지한 것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발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김은진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은폐하려는 관저비용에 관한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이관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거부 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대응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회피하려는 부존재통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규의 마련 등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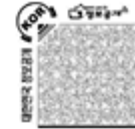
- ▣ 별첨1. 기자회견 개요
- ▣ 별첨2. 정보부존재통지서
- ▣ 별첨3. 발언문
- ▣ 별첨4. 기자회견문

2025. 5.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별첨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내란수괴 윤석열 ‘관저사용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5. 5. 20.(화) 오후2시, 용산대통령실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후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
 - 사회: 조민지 사무국장(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발언1: 이동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발언2: 정진임 소장(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발언3: 김은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010-4150-4347),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010-2277-455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4. 9. 13.>

대통령비서실

수신자 이동규 귀하 (우 04739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51 103-1401)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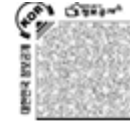
제 목 정보공개 청구의([] 부존재 [] 진정·질의 [] 종결 등) 통지서

접수번호 14150145	접수일 2025. 04. 11.
---------------	-------------------

청구 내용	<p>1. 헌법에서는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 명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 선고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이에 따라 탄핵 결정의 경우 그 선고 일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p> <p>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5. 4. 4. 11:22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였으므로, 위 일시부터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는 박탈되었다고 할 것입니다.</p> <p>2.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경비를 제외한 치료비,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기념사업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따라서, 윤석열은 2025. 4. 4. 11:22부터 파면된 전직대통령의 신분에 있으므로, 경호, 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p> <p>3. 그런데, 윤석열은 2025. 4. 4. 11:22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25. 4. 11. 현재까지 관저에 머물고 있고, 2025. 4. 11. 17:00 퇴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위 기간동안 외부인사들을 관저에서 만나며 매일 만찬을 해준 것을 확인됩니다.</p> <p>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118</p> <p>그렇다면, 2025. 4. 4. 11:22부터 2025. 4. 11. 17:00까지 윤석열이 관저에서 머물면서 사용한 경비비, 경호비를 제외한 비용 일체(식사비, 기본 생활비, 직원 급여 등)는 국고에서 지출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p>
-------	--

인쇄일자 : 2025. 05. 16. 13:39:14
인쇄자 : 이동규

210mm×297mm[백상지(80g/㎡)]
1/3



	<p>따라서, 위 기간 동안 관저에서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또 그 비용은 누가 지출하였는지 어부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국고에서 지출되고 이를 환수하지 않은 경우, 민사적, 형사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p> <p>참고로, 관저 퇴거 후 제3의 주거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곧바로 퇴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가능하나, 위 상황과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머무는 시간동안 지출 비용은 얼마든지 추후 정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p> <p>4.</p> <p>위와 같은 이유로, '2026. 4. 4. 11:22부터 2026. 4. 11.까지 문석열 및 그 일가가 동산 관저에서 머물면서 사용한 비용 일체(경로, 경비비 제외) 및 그 내역'과 '위 비용 지급 주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위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폐하고 공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p> <p>(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p>
<p>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p>	<p>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안녕하세요. 대령명비서실입니다. o 귀하가 청구하신 내용은 정보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o 감사합니다.
<p>인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p>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행정관 **김**

총무운영관리팀장 **최**

합의자

시행 총무운영관리팀-41(2025. 04. 18.)

주소 04888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전화번호 02-000-0000

팩스번호 02-000-0000 / -@president.go.kr

/ 공개 구분

유의사항

첨가된 정보공개시스템 및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불지러 문서를 대외적으로 출몰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적인 본인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쇄일자 : 2025. 05. 16. 16:58:14
인쇄자 : 이동규

210mm×297mm[복합지(80g/㎡)]
8/8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메시지비서관		
처리자	이재희	직위/직급	행정요원(6급상당)
주소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세종로)		
전화번호	02-000-0000	팩스번호	02-000-0000
전자우편	-@president.go.kr		

결재 정보

결재 요청일자	2025.04.18	결재 일자	2025.04.18
기안자	전	직위/직급	행정관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		직위/직급	
전결자		직위/직급	
대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최	직위/직급	총무운영관리팀장
문서번호	총무운영관리팀-41		

[별첨3] 발언문

[발언문1] 이동규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현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윤석열은 그 시점부터 대통령의 자격이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국가의 예산이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단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일 뿐입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직중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경비를 제외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전직대통령으로서도 대통령 관저에서 국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이후 4월 11일 오후 5시 퇴거할 때까지 무려 7일간,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탄핵 이후 용산 대통령실 관저 주방 인력과 차량, 보좌 인력이 동원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윤석열은 매일 외부 인사들과 관저에서 만찬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파면 당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고 이후 윤상현, 나경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극우 유튜브 전한길도 위 기간 동안 윤석열을 관저에서 만난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무슨 낮으로 관저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식비, 생활비, 공공요금,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은 누구의 돈으로 지급되었습니까? 국가 재정이라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출내역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사비라면 그 역시 증빙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비용들이 세금으로 지출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25년 4월 11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에 관련 지출 내역을 청구했습니다. 파면 이후인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관저에 머물면서 사용한 경호·경비 제외 모든 비용 내역과 그 지출 주체를 공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비서실은 위 청구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부존재한다’라는 단 한 줄짜리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국가 시설을 사용하고, 사람이 살고, 식사를 했는데도 관련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과거 대통령비서실은 시민단체가 ‘윤석열의 450만원 상당의 외부 식사비용 및 그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영수증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외부 식당에서의 저녁식사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와 관련하여 당연히 식사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인데, 그 비용지출과 관련한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예산지출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251, 서울고등법원 2023누59874)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일가가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식사 등을 하였다면, 당연히 지출이 있었고, 정보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법이며, 국민 주권에 대한 모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 대통령비서실의 처분서에 처분 담당자 이름조차 명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직원명단 등을 공개 청구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는바, 담당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3누56622)하였고, 위 판결은 올해 2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대통령비서실은 자신들의 직원 명단이 국가 1급 비밀인 것처럼 또다시 은폐한 채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예산이 1원이라도 집행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하며, “정보가 없다”는 말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파면 이후에도 관저에 머무르며 연일 만찬을 벌였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회계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불법 집행이며, 회계기록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025년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윤석열 일가가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모든 비용과 내역을 전면 공개하라.

해당 비용의 지출 주체와 예산 항목, 회계 기록을 명확히 밝혀라.

이번 정보공개처분의 담당자 실명을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하라.

감사합니다.

[발언문2] 정진임 소장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 기자회견에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대통령비서실에 공개했어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쌀로 밥짓는 당연한 요구를 해야 합니까.

파면이후 관저 퇴거일까지 7일동안 윤석열이 관저에서 쓴 예산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정보부존재라는 답변을 내 놓아줍니다. 말 그대로 청구한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정보가 없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파면이후 관저에서 일주일간 사용한 물의 양만 228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은 파면이후 관저에서 거의 매일 외부인사를 불러들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별 만찬도 열었습니다. 관저로 식자재 트럭이 들어오고, 대통령실 조리사들까지 관저로 불러들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경호 외에는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파면된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리사들을 불러들여 파티를 열었는데, 혹시 국민의 세금이 쓰인건 아닌지! 잘못 쓰였다면 환수해야 하는건 아닌지! 말입니다. 내역을 확인하고 환수를 요구하려면 그렇게 쓰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상식적이고 흔한 정보공개청구고,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국가기밀이나 민감한 사생활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한 것도 아니고, 없는 정보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정보부존재 입니다. 저는 관저가 물도 잠그고 불도 끄고 고요한 상태로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윤석열이 관저에 사람들을 불러 환송파티를 열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먹고 마시고 썼으면 당연히 해당 정보는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였을테니 당연히 공개돼야 합니다. 만약 세금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실 조리사를 불러들인 근거와 관저의 사적이용에 대한 집행에 대한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부존재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회피할때 자주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소송과정에서 검찰은 특활비 영수증이 없다고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의대증원 논란이 첨예하던 시기,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회의록이 없다고 부존재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검찰은 부존재를 주장하다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나 결국 1만장이 넘는 특수활동비 예산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는 것 자체가 법위반논란이 되자 며칠뒤 사실은 회의록이 있었다고 스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정보은폐를 목적으로 한 정보부존재 통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데도, 왜 대통령실은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위법한 공개 거부나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보은폐를 위한 거짓말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6월 3일이면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기록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기록이 지정기록으로 보호된다면 대통령실이 은폐하고 있는 이 정보는 15년에서 최장 30년간 봉인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비서실은 이것을 기다리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공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정보공개거부 행보를 밟은 대통령비서실은 임기 중 정보공개소송만 7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공무원 명단, 업무추진비 자료 등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공개해야 할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비공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명단은 대법원에서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이번 정보공개청구에도 담당 공무원을 행정관 전00, 총무운영관리팀장 최00으로 이름을 가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마저 02-000-0000이라고 통지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 번호로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들립니다. 문득 궁금합니다. 전00, 최00은 실존하는 사람이긴 합니까? 우리는 대통령실비서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얼마만큼을 의심해야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은 시민들에게 왜 이런 자괴감을 주는 겁니까.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실의 정보은폐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별 집행액과 건수'에 대해서도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란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되던 집행건수와 집행액조차, 직무정지 이후에는 감춰진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의 월별 집행 건수와 금액이 국가 기밀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예산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한 공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내란과 탄핵이라는 중대한 국정혼란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오히려 국민의 감시로부터 더욱 단단히 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부끄러울것이 없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는 의혹만 부추길 뿐입니다. 정보를 은폐할수록 파면된 대통령이 쓰지 말아야 할 세금을 썼다는 의혹만 더 살 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 경고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불법행위를 숨겨주는 곳이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이 보호해야 할 것은 파면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답게 투명하고 책임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영원한 비공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의 정보은폐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알권리 침해하는 대통령실에 분노의 마음을 담아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관저비용 즉각 공개하라!
정보은폐로 파면된 대통령 숨겨주는 대통령비서실 규탄한다!

[발언문3] 김은진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 4. 4.부터 4. 11.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그 일가와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 일체를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므로 대통령비서실은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발언에서 누차 강조하였듯이, 대통령비서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은폐하고 “부존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비서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25. 4. 4.부터 4. 11.까지 관저비용 사용처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관저 사용이 있음([참고 링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용처의 기록 수행을 거부하거나 기록할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관저비용 사용처의 기록이 존재함에도, 대통령비서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존재” 결정을 하였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알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합니다.

셋째, 대통령비서실이 관저비용 사용처의 기록이 존재함에도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았음”이라는 정보공개 회신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대통령비서실의 관저비용 사용처 기록에 대한 “부존재” 회신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보아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 비서실이 계속 관저비용 사용처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다면 이러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통령비서실의 범죄 사실을 명백히 밝혀낼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이 은폐하려는 관저비용 사용처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한 “부존재(정보없음)” 통지는 위법·부당한 처분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 계속 관저비용 사용처 내역을 은폐할 경우, △대통령비서실 이관 후 2025. 4. 4.부터 4. 11.까지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다시 거부할 경우 △거부결정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 및 행정법원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25. 4. 4.부터 4. 11.까지 관저비용 사용처 기록에 대하여 “부존재” 결정을 한 대통령비서실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회피하려는 부존재 통지의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법규의 마련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관저 사용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을 규탄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그 즉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민간인이 되었으며, 더 이상 국가 예산을 사용할 법적 권한도, 대통령 관저에 머물 정당한 이유도 없어졌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은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를 사용할 수 없고, 국가 예산으로부터도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법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파면 이후 4월 11일까지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고, 이 기간 동안 각종 인사가 관저를 방문했으며, 식자재 차량과 조리 인력 등 대통령실 자원이 동원되었다는 보도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란죄로 파면된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관저에서 내란세력을 집결하고 정치적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파면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저를 방문했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국힘 정치인들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만났다.

우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락한 전직 대통령이 7일간 관저에 머물면서 누린 돈의 출처와 금액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5년 4월 11일 대통령비서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이 관저에 머물면서 사용한 식비, 생활비, 공공요금,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 모든 비용 내역과 그 지출 주체를 공개해 줄 것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단 한줄의 답변만을 보내왔다. 즉,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일간 물과 전기를 쓰고, 식사를 하고, 직원들이 근무했음에도 관련 비용 기록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이고, 기록이 있음에도 숨기고 있다면 이는 정보은폐이다. 국민으로부터 예산집행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정보공개 회신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 조차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은 정보공개법에서도 공개하라고 명시한 정보다. 행정의 설명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다. 대통령실의 막무가내 비밀주의는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써의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우리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회피가 정보공개법 제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적 행정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부예산의 불법적 지출에 대해서는 국민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가 예산이 1원이라도 집행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대통령비서실은 법에 따라 2025년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윤석열과 그 가족이 관저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비로 관저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증빙도 당연히 있어야 하니, 명백히 소명하라.

윤석열의 환송만찬비용이 만약 세금이라면, 이는 형법상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예산은 반드시 윤석열에게 환수조치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을 시민들이 확인하고, 불법적 예산집행여부를 감시하려면 대통령비서실이 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은 정보부존재 답변을 했다. 만약 이것이 불법적 예산집행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다. 대통령비서실은 파면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세금 사용의 투명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은폐하려는 정보는 이제 6월 3일 이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최장 15년에서 30년간 보호기록으로 지정되어 봉인될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진실이 영원히 묻히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25.05.2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